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3. . .<br>(제 회) |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br>(환경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3.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8월 1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추가하며, 충분한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 학력조건 없이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물질약전문업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인력기준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주체를 명확히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강화 사항 없음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목이 전·답인 토지에서 하는 영농을 위한 나무의 벌채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법 제2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말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6항”을 “법 제24조제8항”으로, “시험과목”을 “자격시험 시험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1급·2급 및 3급”을 각각 “1급·2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급

과 3급”을 “2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8호 및 제9호”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67조제1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67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의 운영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

별표 1의5 제1호다목1) 중 “1명 이상”을 “1명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에서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건설 배관,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다만, 다목1)의 특급기술자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전문분야(건설부문) 중 상하수도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연구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누수탐지기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의3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1호가목3)에서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건설 배관,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이 2개 업무 분야의 대행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제1호 가목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최대 1인까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이 3개 업무 분야의 대행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제1호 가목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최대 2인까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거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별표 5 제2호과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과. 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수<br>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br>경우 | 법<br>제87조제3항<br>제3호의4 | 300 | 300 | 300 |
|--------------------------------------------------|-----------------------|-----|-----|-----|

별표 5 제2호서목(중전의 버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  | 50 | 70 | 100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67조제6항제1호의 개정사항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2호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면제에 관한 경과 조치)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8월 16일까지 실시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일부 면제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제41조 관련)

| 등 급   | 자 격 요 건                                                                                                                                                                                                                                                                                                                                                                                                                                                                                                                                                                                                                        |
|-------|--------------------------------------------------------------------------------------------------------------------------------------------------------------------------------------------------------------------------------------------------------------------------------------------------------------------------------------------------------------------------------------------------------------------------------------------------------------------------------------------------------------------------------------------------------------------------------------------------------------------------------|
| 1. 1급 |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p> <p>가.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나.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다.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
| 2. 2급 |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p> <p>가.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p> <p>나.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다.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마.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p> <p>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p>                                                                                                                                                        |

|       |                                                                                                                                                                                                                                                                                                    |
|-------|----------------------------------------------------------------------------------------------------------------------------------------------------------------------------------------------------------------------------------------------------------------------------------------------------|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3급 |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p> <p>가.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p> <p>나.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다.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p>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 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2. (생략)<br><u>&lt;신설&gt;</u><br><br>3. ~ 5. (생략) |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 행위) -----<br>-----<br>-----<br>-----.<br>1.·2. (현행과 같음)<br>3. <u>지목이 전·답인 토지에서 하는 영농을 위한 나무의 벌채</u><br>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 자격)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3과 같다.<br>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u>&lt;신설&gt;</u>                                                                                                                                        | 제41조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과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4. 수질환경산업기사 : 제42조제

양성과정 수탁기관) 법 제24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말한다.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8항-----  
-----  
-----  
----- 자격시험 시험과목-----.

1. -----  
-----  
-- 1급·2급-----  
-----  
--
  2. -----  
-----  
-- 1급·2급-----  
-----  
---
  3. -----  
-----  
2급-----  
-----
- <삭 제>

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  
사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  
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  
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에 따  
른 건축물 또는 시설

나.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에 따른 시설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  
-----  
-----  
-----  
-----  
--.

1. -----  
-----  
-----  
-----

가. -----  
----- 제10호-----  
-----

나. (현행과 같음)

2. -----  
-----  
-----  
-----

가. -----  
----- 제8호부터 제10  
호까지-----

나. (생략)

② ~ ⑤ (생략)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4. (생략)

4의2. 법 제8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생략)

② ~ ⑤ (생략)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신설>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의 운영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

|                                                                 |                                                                                                     |
|-----------------------------------------------------------------|-----------------------------------------------------------------------------------------------------|
| <p><u>1</u>의2. (생략)</p> <p><u>2</u>. (생략)</p> <p>⑦ · ⑧ (생략)</p> | <p><u>부</u></p> <p><u>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p> <p><u>4</u>. (현행 제2호와 같음)</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환경부 수도권기획과 |                  |
|------------|------------------|
| 연 락 처      | (044) 201 - 7121 |